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99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김문수·김우영·이광희
김남근·민병덕·양부남
박홍배·임문영·한병도
송재봉·박범계 의원
(11인)

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악의적 ·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 · 욕설 · 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 · 양육 ·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욕설과 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2.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어 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① ----- ----- ----- 제17조제1항제3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욕설과 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2.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어 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